

2. 그리스도인과 정치적인 문제들

(1) 사법권의 관리

교회와 국가가 상호협조하는 체제에서는 교회 주교들이 국가의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주교에게 이와 같은 교회 외적 사법권이 주어진 이유는 주교들이 편견이 없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백성들이 주교를 신임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정치적인 통치자보다는 주교를 재판관으로 선택하고 싶어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교도의 법정”에 고소해서는 안된다는 사도 바울로의 권고를 바탕으로 하여(고린토전서 6:1-8), 그리스도교인들은 특히 더 이방인을 재판관으로 하기보다는 주교를 재판관으로 하기로 원하였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주

교들은 일종의 특별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판결은 국가에 의해서도 인정되었고 상고할 수 없는 확정판결로 간주되었다.

주교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부여한 사람은 콘스탄티노스 대제였다.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성직자들이 가장 믿을만한 재판관이라고 인정하면서, 고소인이 바랄 경우에는 주교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주교의 판결은 세속법정의 판결보다 우월하다고 결정하였다. 테오도시우스 2세(4058~450) 도 주교들의 판결은 세속법정의 판결보다 더 상위라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주교들의 이러한 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 후 계속해서 재판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하게 나타난다. 세속법정에는 보통 두 명의 사제가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외에도 총대주교관할하에 교회 고등재판소가 존재하였는데, 교회 고등재판소는 세속 재판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세속 재판소를 대신하여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비잔틴 제국은 주교들에게 감옥을 감독할 권한과 재판관들의 업무를 감사할 권한과 투옥된 사람들을 좀 더 인간적으로 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였다. 서로마제국의 황제였던 테오도시オス 1세의 아들 오노리오스 황제(384~423)도 동일한 권한을 주교들에게 부여하여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때에는 재판관과 감옥의 책임자들을 주교들이 문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스티니아노스 황제(527~565) 또한 529년에 법을 제정하여 주교들로 하여금 매 수요일과 금요일에 감옥을 방문하여 투옥된 사람들을 선도하는 영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한편 그들의 감옥 안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오도록 하였다. 유스티니아노스 황제는 지방관리를 감독하는 직무를 주교에게 맡기기도 하였다.